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나604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피고, 항소인 1.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2. 주식회사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한석영

변 론 종 결 2021. 9. 30.

판 결 선 고 2021. 11. 4.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223501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47,536,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 및 피고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최하단행의 ‘원고들들을’을 ‘원고들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석동, 판사 이보람, 판사 구성훈